

보험료납입유예특약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

제 1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

제2관 보험료의 납입유예

제2조 [보험료 납입유예 적용대상]

제3조 [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]

제4조 [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]

제5조 [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계약의 효력]

제6조 [보험기간, 납입기간, 연금개시나이의 변경]

제3관 기타사항 등

제7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보험료납입유예특약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

제 1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

-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(講約)과 보험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“주계약”, 보험계약자는 “계약자”, 보험회사는 “회사라 합니다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③ 주계약이 해지(解止)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제2관 보험료의 납입유예

제2조 [보험료 납입유예 적용대상]

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.

1. 외국통화로 보험료 납입하는 보험계약
2.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계약
3.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외국통화에 대한 원화의 평균환율상승률이 10.00%이상일 경우
4.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까지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

제3조 [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]

-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을 보험료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②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제2조(보험료납입유예 적용대상)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유예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[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]

- ①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을 통지하여 드립니다.
- ②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.
- ③ 계약자는 제3조(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)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 언제든지 보험료 납입유예를 철회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④ 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제3항의 보험료납입유예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 해당일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입, 납입최고(독촉), 계약의 해지 등을 준용합니다.

제5조 [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 계약의 효력]

- 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계약 적립금에서 필요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납입후 유지비를 충당합니다.
- ②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 주계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제6조 [보험기간, 납입기간, 연금개시나이 변경]

- ①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(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),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(연금보험에 해당)는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.
 - 1.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장합니다.
 - 2.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순연 합니다.
- ② 제1항의 적용에 따라 변경후의 보험기간, 납입기간 또는 연금개시나이가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납의 경우에는 계약자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제3관 기타사항 등

제7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 규정을 준용합니다.